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40호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퇴소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다. 퇴소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지원사업과 위탁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대전광역시 퇴소아동자립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퇴소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7, FAX 042-270-5039, E-mail : ychm1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조사)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화학물질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현황조사 등을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사고 예방) ① 시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화학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 현황과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화학물질 사업장 및 주민에게 알려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학사고 시 초기대응 능력강화를 위하여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화학사고로 인해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인구밀집 지역에서 다량의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지역협의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주민 대표 및 사업장 관계자
2. 소방서장,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3.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③ 화학물질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 사업자, 취급자 등에게 화학물질 안전관리, 화학사고시 대응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고대비물질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홍보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